중앙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National Center for Digital Sexual Crime Response

2026
Vol. 3

INFO LETTER

지금 법·정책은?
디지털성범죄 대응 국내외 법률·정책 현황 및 소식

유럽평의회 부다페스트 협약 위원회·란자로테 협약 위원회 「AI 생성 또는 조작 아동 성착취·성학대물에 관한 공동성명」 발표

유럽평의회 사이버범죄에 관한 협약(부다페스트 협약)[1] 위원회와 란자로테 협약[2] 위원회[3]가 지난 6월,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AI 생성 또는 조작 아동 성착취·성학대물에 관한 공동성명[4]」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의 핵심은 새로운 입법 없이도 기존 협약만으로 AI 생성물을 처벌할 수 있다는 점을 공식 확인하고, 각국에 관련 유보조항을 재검토하도록 권고한 데 있습니다.

부다페스트 협약 제9조와 란자로테 협약 제20조는 아동을 사실적으로 또는 가상으로 묘사한 자료뿐만 아니라, 컴퓨터시스템과 AI를 이용하여 생성하거나 조작한 아동 성착취·성학대물도 포함합니다.

부다페스트 협약 제9조의 내용[5]:

제9조 (아동 성착취물 관련 범죄)
1. 각 당사국은 권한없이 고의로 범해진 다음의 행위를 국내법상 범죄로 하는데 필요한 입법 및 그 밖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a. 컴퓨터 시스템을 통하여 배포할 목적으로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
b. 컴퓨터 시스템을 통하여 아동 성착취물을 이용하도록 하거나 제공하는 행위
c. 컴퓨터 시스템을 통하여 아동 성착취물을 배포 또는 전송하는 행위
d. 본인이나 타인을 위하여 컴퓨터 시스템을 통하여 아동 성착취물을 획득하는 행위
e. 컴퓨터데이터 저장매체 또는 컴퓨터시스템에서 아동 성착취물을 소지하는 행위
2. 제1항의 아동 성착취물에는 다음 행위를 시각적으로 묘사하는 성착취물을 포함시켜야 한다.
a. 성적으로 노골적인 행위를 실현하는 미성년자
b. 성적으로 노골적인 행위를 미성년자가 실현하는 것처럼 행위하는 사람
c. 성적으로 노골적인 행위를 미성년자가 실현하는 것처럼 보여주는 사실적인 영상
3. 제2항의 미성년자에는 18세 이하의 사람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당사국은 연령을 낮출 수 있으나, 최저 16세 이상이어야 한다.

란자로테 협약 제20조의 내용[6]:

제20조 – 아동 성착취물에 관한 범죄
1. 각 당사국은 권한없이 고의로 범해진 다음의 행위를 형사범죄로 규정하도록 필요한 입법 또는 기타 조치를 취해야 한다.
a.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
b. 아동 성착취물을 제공 또는 이용 가능하게 하는 행위
c. 아동 성착취물을 배포 또는 전송하는 행위
d. 자신 또는 타인을 위하여 아동 성착취물을 취득하는 행위
e. 아동 성착취물을 소지하는 행위
f. 정보통신기술을 통해 아동 성착취물에 고의로 접근하는 행위
2. 이 조항에서 "아동 성착취물"이라는 용어는 아동이 실제 또는 가상의 노골적인 성적 행위에 가담하는 모습을 시각적으로 묘사한 모든 자료 또는 주로 성적 목적을 위해 아동의 성기를 묘사한 모든 자료를 의미한다.
3. 각 당사국은 제1항 a호 및 e호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의 성착취물 제작 및 소지에 적용하지 않을 권리를 유보할 수 있다.
- 실존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모의 묘사 또는 사실적인 이미지로만 구성된 것
- 제18조 제2항의 적용에 따라 정해진 연령에 도달한 아동이 관련된 것으로, 해당 이미지가 아동 본인의 동의 하에 제작 및 소지되었으며 오로지 자신의 사적 용도로만 사용되는 경우

이처럼 기존 협약 조항들은 기술 중립적이므로 제작·조작·유포에 어떤 기술이 사용되었는지와 무관하게 적용되며, 실존 아동의 초상을 이용한 것은 물론 실존하지 않는 아동을 묘사한 것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7] 아울러, 성명에서는 사이버범죄 협약 제9조 제2항 c호 및 란자로테 협약 제20조 3항 관련 유보조항의 적절성에 대해 재검토할 것을 각 당사국에 권고했습니다.

이번 성명의 시사점은 범죄 구성 요건이 특정 기술의 사용 여부에 구애받지 않는 데 있습니다. 그동안 법·제도가 신기술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입법 공백이 발생하는 등 디지털성범죄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기존 협약의 내용을 기술의 발전과 관계없이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이밖에도 성명은 ①실존 아동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성학대물의 우선 수사, ②신속한 탐지·삭제 조치 강화, ③테크 기업의 법적 책임 강화, ④범죄수익 몰수, ⑤피해자 초상 도용 시 권리구제 강화, ⑥대중 인식제고 활동 등을 함께 권고하며 마무리되었습니다.

1) 사이버범죄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Cybercrime, 일명 "부다페스트 협약(Budapest Convention)", ETS No. 185): 2001년 유럽평의회가 채택, 2004년 7월 발효된 사이버범죄 대응 협약으로, 아동 성착취물의 제작·유통·배포·소지 등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음.
2) 아동 성착취·성학대로부터 아동보호협약(Council of Europe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gainst Sexual Exploitation and Sexual Abuse, 일명 "란자로테 협약(Lanzarote Convention)", CETS No. 201): 아동에 대한 성착취 및 성학대 방지를 위해 유럽평의회가 채택한 협약.
3) 란자로테 협약 당사국 위원회(Committee of the Parties to the Lanzarote Convention, "란자로테 위원회(Lanzarote Committee)"): 협약 당사국들의 이행 상황을 점검·감독하기 위해 설립된 협약상 기구
4) 원제: Joint statement on AI-generated or altered child sexual exploitation or sexual abuse material by the Cybercrime Convention Committee (T-CY) and the Committee of the Parties to the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gainst sexual exploitation and sexual abuse (Lanzarote Committee)
5) 국회도서관 입법자료포털 > 법률정보 > 외국법률번역DB (※이때, '아동포르노'로 번역된 부분은 '아동 성착취물'로 수정해 작성하였음) https://law.nanet.go.kr/foreignlaw/foreignIndex/foreignIndexView.do?cn=TLAW1202000204
6) Council of Europe > Children's Rights > Committees > Lanzarote Committee > Lanzarote Convention (※이때, 원문의 'child pornography'는 '아동 성착취물'로 번역해 작성하였음) https://www.coe.int/en/web/children/lanzarote-convention
7) 이는 협약이 '아동으로 보이는 인물'의 묘사까지 범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임.

범정부 디지털성범죄 대응 협의체[8] 「불법촬영물등 유통 사이트 심층분석을 통한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발표

지난 8월 20일,「불법촬영물등 유통 사이트 심층분석을 통한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 (이하 대응 방안)」이 범정부 디지털 성범죄 대응 협의체를 통해 확정·발표되었습니다. 이번 대응 방안은 디지털 성범죄의 근원지인 불법사이트 자체를 완전히 무력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불법촬영물 등의 유포가 불법사이트를 중심으로 반복되고 있지만, 불법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처벌과 수사, 사이트 차단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삭제지원 과정에서 수집한 불법촬영물 유포 사이트를 분석한 결과, 34,628개 사이트 중 19.3%인 6,683개가 현재도 접속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운영자가 동일한 385개 그룹도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불법촬영물 유통을 유도하는 동시에 도박·성매매 등 다른 범죄로 연결되는 구조를 보였습니다. 특히 주요 수익원으로 활용된 도박·성매매 배너광고의 총 수익규모는 약 304억으로 추정됐습니다.

이처럼 광고 수익과 우회 기술 등을 통해 불법사이트 운영이 이어지고 있어, 불법사이트 개설 행위에 대한 처벌과 수사를 강화하고 광고 수익 차단, 새로운 차단기술 도입, 해외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응 방안에서 제시된 정책과제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처벌·수사 강화하여 불법생태계 근절	• 불법사이트 개설 행위를 독립 범죄화하여 정범으로 강력히 처벌하는 입법 검토 • 경찰청 내 '불법사이트 특별수사팀' 신설 및 외국 수사기관·국제기구와의 공조 지속 • 수사기관이 사이트에 직접 접속해 수사단서 수집 및 불법촬영물 원본 데이터를 삭제하는 '능동적 방어(합법적 해킹)' 도입 적극 검토
② 불법사이트 무력화를 위한 전방위 제재 강화	• 불법사이트 내 광고 게재를 전면 금지해 주 수익원을 차단, 위반 시 과태료·과징금 부과하도록 법 개정 추진 • '강화된 고객확인제도' 활용을 통해 불법사이트 운영에 이용된 계좌 거래정지 추진 • 해외서버 이용 사이트의 경우 범부처 합동 대응·불법성 공문 발송 및 해당국 법령 활용하여 제재 강화 • 플랫폼 사업자에게 아동 성착취물 및 불법촬영물 이용 콘텐츠 발견 시 신고 및 이용자 정보(ID, IP) 제출 의무 부과
③ 불법사이트 신속 탐지 및 차단 실효성 제고	• 사이트가 차단되더라도 지속적으로 도메인을 바꿔 차단을 회피하는 '도메인호핑'에 대응하기 위해 AI 기반 불법사이트 전(全)주기 대응 기술 개발 및 시스템 구축 추진 • 불법촬영물 삭제요청에 지속적으로 불응하는 사이트에 대해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접속 차단을 요청할 수 있는 긴급 차단 요구권 도입 • 새로운 암호화 통신 기술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차단 기술 도입 검토, 비복호화 기반 암호 트래픽 분석 등 기술 개발 추진
④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통합 거버넌스 구축	불법사이트 접속·이용 근절 캠페인 추진 및 초·중·고·대학 대상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콘텐츠 배포 '디지털성범죄STOP 통합누리집' 및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생각함' 내 국민 정책 제안 및 불법사이트 제보를 위한 국민 소통 창구 상시 운영 중장기적으로 디지털성범죄 대응 전담 대응 체계를 마련 및 피해자 중심의 통합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법 제정 추진 검토

8) 성평등가족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기관장으로 구성된 협의체로, 지난 6월 9일 출범.

함께 읽어볼 자료
디지털성범죄 관련 연구 및 간행물 요약정리

기술매개 젠더기반폭력: 생애주기별 고려사항 (2025)
원제: Technology-facilitated Gender-based Violence: Considerations Across the Life Course
(UNFPA)

불평등한 성별 격차에서 비롯되는 젠더기반폭력(GBV, 이하 GBV)이 개인의 사회적 위치와 교차하는 차별의 형태에 따라 다르게 경험되듯이, 기술매개 젠더기반폭력(TFGBV, 이하 TFGBV) 역시 마찬가지로 여성과 여아들이 불균형적으로 경험하고 있으며, 아동기부터 노년기까지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특정 형태의 피해는 특정 생애 단계에 더 밀집하게 발생하기도 합니다.

생애주기에 따라,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TFGBV 피해양상을 살펴보면, 아동·청소년에게는 아동 성착취물(CSAM)의 제작 및 유포, 온라인 그루밍 등이, 성인 여성에게는 친밀한 관계 내 피해, 직장 내 온라인 괴롭힘 및 온라인 금융 착취 등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다만 보고서는 특정 피해 유형이 특정 연령대에만 국한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명시합니다. 사이버스토킹, 신상정보 유포, 비동의 유포 및 AI 생성 딥페이크 등 이미지 기반 학대, 온라인 괴롭힘 등은 전 연령대에 걸쳐 발생할 수 있는 유형으로 분류되며, 생애주기별 TFGBV 피해양상에 대한 근거는 아직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보고서가 연령별 구분을 강조하는 이유는, 단순히 연령대별로 흔히 겪는 폭력의 유형이 다르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에 따라 피해자를 어떻게 대할 것인지, 대응적인 면과 더불어 정책 및 사업 추진에 대한 접근법 자체가 달라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령 피해자가 아동일 경우, 대응법은 유엔아동권리협약(CRC)과 같은 조약에 근거해 국가와 보호자가 아동의 발달 능력[9], 의존적 지위 그리고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할 책임을 가집니다. 반면 여성 대상 GBV 대응에 있어서는 여성의 자율성·기밀성·의사결정권을 핵심으로 하는 생존자중심 접근을 보다 우선시합니다.

만약 연령 간의 차이를 지우고 성인 여성에게 아동 보호 방식에 기반한 대응법을 적용하면, 여성의 자율성과 주체성을 훼손하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청소년 여아는 아동보호와 GBV 프로그램 양쪽에서 모두 간과되기 쉬운 특수한 위치에 있어, 아동권리협약상의 발달중인 역량과 주체성을 존중하면서도 생존자 중심 원칙을 적용하는 별도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됩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TFGBV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아동 보호 대응과 여성 대상 GBV 대응 분야가 서로 통합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5가지 핵심 영역을 제시합니다. 구체적으로 ① 생존자 중심의 법적 보호, ② 생애주기 전반의 조기개입과 예방, ③ 안전·프라이버시·권리 중심 설계 및 기술기업의 책무성, ④ 역량강화와 생존자 중심 서비스, ⑤ 생애단계별 학습과 연구를 언급하며 마무리됩니다.

9) children's evolving capacities

바로가기

디지털성범죄 대응 종사자들의 건강과 웰빙 (2025)
원제: Health and wellbeing of frontline responders
(WeProtect Global Alliance)

이 연구 보고서는 디지털성범죄 대응의 최전선에 있는 종사자들(이하 종사자)이 일상 업무로 인해 겪을 수 있는 트라우마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종사자의 건강과 웰빙을 탐구하고, 고용주 및 조직 차원에서 보장되어야 할 실질적인 조치 및 권고사항을 제시합니다. 해당 보고서는 기존의 선행 연구 및 실제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심층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사자들은 대개 자신의 업무에 자부심을 느끼고 높은 직무 만족도를 표현합니다. 그러나 많은 종사자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관련된 정신건강 증상을 보고하는 등 업무의 성격은 이들의 건강과 웰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응답됐습니다.

업무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보는 것은 종사자들의 웰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아동 성착취물(CSAM)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반면 신고된 콘텐츠가 플랫폼에서 신속히 삭제되지 않는데서 오는 좌절감 등 업무 결과에 대해 많은 종사자들이 개인적인 책임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가족·친구에게 업무내용 및 고충에 대해 이야기하기 힘들다는 어려움 또한 존재합니다. 이러한 면에서 동료들 간 서로의 부담을 이해하고 지지하는 비공식적 동료 지원체계로서 '직장 가족(work family)'의 형성은 효과적인 전략으로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종사자들에게 함께 일하는 직장동료·지지적인 환경이 건강과 웰빙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사자들은 조직으로부터 정신건강 서비스(상담) 지원 및 회복을 위한 대처 전략을 안내받기도 하지만, 종사자들의 건강과 웰빙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보다 고용주·조직 차원에서 권고되고 지켜져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령 조직의 문화, 구조, 시스템 및 환경은 종사자들의 건강과 웰빙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조직으로부터 인정받는 느낌, 종사자들의 의사를 반영한 정책, 사건 처리결과에 대한 체계적인 피드백, 쾌적한 물리적 환경, 유용한 기술 도구 등의 요소들이 언급됐습니다.

또한, 고용주 및 조직은 채용부터 퇴사 이후까지 종사자의 근무주기 전반에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정신건강의 면에서, 종사자들은 언제든지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하며 정신건강상의 문제가 뒤늦게 발현되는 경우를 고려해 조직을 완전히 퇴사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종사자들이 고립감을 느끼지 않도록 업무의 전문성을 명확히 인지하고 조직 차원에서 가치를 알릴 수 있어야 합니다. 고유한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소속된 조직의 유형과 관계없이 종사자들이 지닌 전문화된 기술 역량을 인정해야 합니다.

종합하면, 종사자들의 건강과 웰빙을 위해서는 개인 차원의 대처 전략을 넘어, 고용주 및 조직 차원에서 종사자의 업무 특성과 개별적인 필요를 이해하고 이에 맞는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은 이러한 지원은 종사자들의 건강과 웰빙을 증진하는 동시에 직무만족도를 높이고 종사자들이 업무를 지속하는 데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가기

현장 소식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소식 이모저모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사례

함께 배우며 키워가는 디지털성범죄 예방 역량

부산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부산디성센터)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1:1 맞춤형 교육(재피해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크게 성교육, 디지털범죄 예방교육, 미디어 리터러시 세 가지 주제에 맞춰 진행되며, 피해자가 스스로 필요성을 인식해 수요가 발생하게끔 운영하고 있습니다.

피해 당사자의 주양육자가 부모님인 경우, 상대적으로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가족까지 함께 교육에 참여해 디지털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는 데 핵심을 두고 있습니다.

부산디성센터는 향후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디지털성범죄의 배경과 구조, 피해 발생시 대한 방안 및 자녀와의 소통 방안 교육 등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며, 양육자들의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예방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부산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함께하는 쉼으로 채워가는 일상의 회복

디지털성범죄 피해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내담자들이 일상에서 벗어나 다양한 체험 및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충북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충북디성센터)에서는 <치유회복프로그램 – 하루 쉼>을 운영했습니다.

서로 처음 만나는 내담자들이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도록 활동 구성과 진행 방식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어색함 없이 활동할 수 있게 지원했고, 신체활동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구성해 자연스럽게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정서적 안정과 긍정적 감정을 경험하도록 유도하며 활동적인 회복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충북디성센터는 향후 디지털성범죄피해 통합사례회의 및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며, 청소년기관 및 대학교와 협업해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충북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소식

디포유스 아동·청소년 자문단 자문회의

지난 8월, 디포유스는 아동·청소년 상담채널 접근성 확대 및 성착취 예방 홍보물 이해도 향상을 위해 청소년 자문단과 직접 만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중앙디성센터 랜딩페이지 개설

랜딩페이지를 통해 중앙디성센터의 다양한 홍보 콘텐츠와 이벤트, 행사 소식 등을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제2회 디지털 성범죄 대응 국제 콘퍼런스

다가오는 9월 29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한 국내외 정책 공유 및 국제협력 증진 방안 모색을 목적으로 국제 콘퍼런스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제1회 디지털 성범죄 대응 정책토론회 개최

다가오는 10월 14일, '디지털성범죄 대응 법·정책 및 피해자 지원체계 강화 방안'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